

HW 구매 사업 (제8조제1항제3호 관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 기준
성능 및 규격	규격 요구사항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제품의 요구 규격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평가한다.
	성능 요구사항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제품별, 통합환경에서의 요구 성능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평가한다.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제품간 상호운용성, 기존 제품 및 운용환경과의 상호운용성 및 호환성이 보장되는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사항	(필요시)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제약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제안요청서의 규격 및 성능 등 요구사항을 충족시 관련 제약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업체 수행 능력	수행실적	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동등 이상 또는 유사 제품 납품 사업 수행 실적율(%)을 환산하여 평가한다. * 실적 증명 자료가 첨부되었을 경우에 한함 *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 함
	재무구조	제안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 함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제안서 발표시 결과 반영
	추진전략	사업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제안서 발표시 결과 반영
사업 관리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제품 납품,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수행조직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 투입 인력(전문성, 소요MM 등), 임무 분장 등이 적절히 구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사업지원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시험운영	납품한 제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시험 평가 및 운영 방법, 수행조직, 점검도구 및 절차 등에 대해 평가한다.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납품한 제품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필요시 기술이전에 관한사항 명시
	유지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납품한 제품에 대한 하자보수,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필요시 유지보수 기간 동안의 SLA수준의 장애대응방안 평가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보안관리계획에 대하여 평가한다.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상생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입찰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등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

- 평가항목은 제8조에 따라 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사업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각 평가항목별로 배점한도를 정하고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적정성'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10점 이상으로 함
- 각 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평가부문별 점수 계산식

$$\text{평가부문별 점수} = \sum_{k=1}^n \text{평가항목 배점}_k \times \left(\frac{\text{평가항목의 취득등급 값}_k}{\text{평가항목의 등급최고값}_k} \right)$$

※ k는 평가부문의 개별 평가항목임

-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부문의 공동수급체 지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 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함.(단 공동이행방식일 경우는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비율로 평가)
- (적용배제)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에는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 부문은 해당사항 없음